

## 〈자료〉

- 소방법중 개정법률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기준
- 구명탄온돌의 시공방법기준 작성지침

### 소방법중개정법률(83. 12. 30일)

法律第3, 675号

소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4호를 삭제한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선박(선박안전법제 2호제 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내에 繫留된 선박에 한한다)·船渠·차량·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物件을 말한다.

제 3조의 제목 “(시·군의 책임등)”을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으로 하고, 동조제 1항중 “釜山市”를 “直轄市”로 하며, 동조제 2항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제 4조제 1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다음 각호의 명령”으로 한다.

제 7조단서를 삭제한다.

제 9조제 4항중 “제32조제 3항”을 “제42조의10제 3항”으로 한다.

제12조제 1항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에 관하여는 제38조제 2항·제 5항과 제40조제 2항·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 1항중 “위험물의 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를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 2항중 “동일저장소”를 “동일저장시설”로 하고, “저장소”를 “저장시설”로 하며, 동조제 3항 중 “대통령령이”를 “내무부령이”로 한다.

제15조제 1항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제19조제 1항중 “안보업무”를 “안전업무”로 한다.

제20조제 1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제 1항중 “自衛消防組織”을 각각 “自体消防組織”으로 한다.

제24조중 “대통령령”을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 4 장의 제목 “소방시설”을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으로 한다.

제29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을 받은 관계자는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중 “소방시설(소화기구·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제외한다)”을 “소방시설(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휴업신고등) 제3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소의 허가를 받은자가 그 영업을 休止·再開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 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 1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단서를 삭제한다.

1. 제3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때 제39조제 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 1항중 “또는 도지사는”을 “(제7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으로,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판매업의 신고를 한자”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자료제출을 명하며”를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며”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소방용수리시설)”을 “(소방용수시설)”로 하고, 동조제 1항 및 제 2항중 “수리시설”을 “소

방용수시설”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소방용수리시설의 지정)”을 “(소방용수 시설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중 “供할 수 있는 水利를”을 “供할 수 있는 소방용수를”로, “소방용 수리시설로”를 “소방용수시설로”로 하며, 동조제 2 항 중 “소방용수리시설”을 “소방용수시설”로 한다.

제42조 다음에 제 4 장의 2 (제42조의 2 내지 제42조의1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4 장의 2 消防設備工事業 등

##### 제 1 절 消防設備工事業

제42조의 2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소방설비공사업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업

2. 제16조제 1 항 및 제2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 방시설의 공사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

3. 제16조제 1 항 및 제2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 방시설의 정비업

②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내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면허 및 그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 3 (변경신고등)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면 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영업을 休止·再開·廢止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 4 (면허의 기준)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면 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말한다)·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의 5 (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刑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파산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2조의 6 (면허의 취소·영업정지) ① 내무부장관은 소 방설비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3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2.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작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면허에 생 신을 받은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5. 면허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 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 1항제 4호 또는 제5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 7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착수 후에 설비변경·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도급한도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 업자의 자본금·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2년마다 이를 정한다.

제42조의 8 (下都給의 제한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는 자가 당해 소방시설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下受給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

제42조의 9 (면허가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 ①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하여 그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방설비공사의 도급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방설비공사업자는 이미 착수한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로 본다.

제42조의10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 소방설비 공사업자가 소방설비공사 (防炎先処理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공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공검査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 2 절 消防設備技士

제42조의11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 ① 소방설비공사 (방염처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 (소방설비기사의 신고) ① 제4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에 종사하고자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申告畢證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설비기사의 신고의 절차·신고사항의 말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3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① 소방설비기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설비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기사는 동시에 2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절 監督 등

제42조의14 (보고·검사등) ① 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 (수수료)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제 1 항중 “이상기상의 경보”를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로 한다.

제 8 장의 제목 “義勇消防隊”를 “義勇消防隊 및 請願消防員”으로 한다.

제63조제 1 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 8 조에 제6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 2 (청원소방원의 배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 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방대 상물의 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소방대 상물의 구역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또는 진압업무를 행할 자(이하 “청원소방원”이라 한다)를 배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청원소방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 4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방화관리자·위험물취급주임·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설비기사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선임·채용 또는 고용된 자

제70조의 4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면허·지정 또는 신고를 하거나 선임·채용 또는 고용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70조의 9 제 1 항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년 1 회 7 일의 범위안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를 “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설비기사 및 청원소방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0조의 9 제 2 항중 “선임 또는 고용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위험물취급주임·위험물취급자·위험물시설안전원의 해임을 명하거나 소방설비기사의 해고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선임·채용 또는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해고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 3 항을 삭제한다.

제70조의11을 삭제하고, 제70조의 10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여 이를 제70조의11로 하며, 제70조의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10 (구급대의 편성운영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이하 “구급업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차의 지원·의료요원의派遣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환자의 처치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구급현장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급업무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호중 “소방용수리시설”을 “소방용수시설”로 한다.

제73조에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은 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罰則) 제5조제5항(제5조제6항·제22조제3항 또는 제5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4조제2호중 “제3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을 “제42조의8제1항·제42조의11제1항·제42조의12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5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제43조제2항”을 “제42조의7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7조제2호중 “또는 제17조”를 “제17조 또는 제42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3의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소방용수리를”을 “소방용수시설을”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제15조제3항·제18조제5항 또는 제4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2. 제42조의8제2항 또는 제4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條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不服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33조,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5, 제73조제4호 및 제5호 제73조의2, 제74조제2호, 제75조제4호, 제76조제5호, 제77조제2호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장소의 防炎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스프링크라실비, 물뿌레기消火設備 또는 포말소화설비로서 자동식인 소화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조제소 등과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과 운반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소방설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소방설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방염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각호의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는 1985년 6월 30일까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내에 동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失効된 것으로 본다.

④ 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면허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기간은 면허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소방설비기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法시행 당시의 소방설비기사로서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

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의1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月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罰則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78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다.

## 공동주택의장기수선에관한기준 (84. 1. 31)

건설부고시제20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1. 목 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의 2와 공동주택관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동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의 장기수선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10년 단위로 작성하되,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 3. 장기수선 계획수립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표]와 같다.

### 4.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영 제23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월간세대별 특별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간세대별특별수선충당금 =

$$\frac{\text{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text{총분양면적} \times 12 \times \text{계획기간(년)}} \times \text{세대별분양면적}$$

### 5. 특별수선충당금 예치기관

영 제23조제 6 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한국주택은행”을 말한다.

### 6.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가. 특별수선충당금은 계획수선공사[별표]의 대상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수선하는 공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의 대상시설에 관한 수선공사라 하더라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 1 항제 8 호에서 규정하는 수선유지비로 하여야 한다.

- ① 계획수선공사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 ②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공사

나.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계획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기술용역 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의 조사의견서를 영 제23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7.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영 제23조제 5 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 나.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 다. 수선공사의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 라.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금액
- 마. 공사발주방법

### 8. 수선현황의 작성

관리주체가 [별표 1]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가. 수선대상시설의 명칭
- 나. 수선내용
- 다. 수선일자
- 라. 수선수량 및 공사비
- 마.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 9. 장기수선계획 등의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장기수선계획과 수선현황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별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

#### 1. 건물외부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지 봉	모르터마감	부 분 수 리	5	18	시멘트 액체방수
	콩자갈깔기	전 면 재 바 름	15	100	
	타 일	보 충	5	15	
	아스팔트 방수층	부 분 수 리	10	5	크링카 타일
		부 분 수 리	8	10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외 벽	고분자도막방수	전면재방수	25	100
		부분수리	5	10
	고분자시트방수	전면재방수	15	100
		부분수리	8	20
	모르터마감	전면재방수	20	100
		부분수리	8	15
	인조석깔기	전면재바름	25	100
		부분수리	10	5
	인조석	전면수리	30	100
	씻어내기	부분수리	8	15
외부창·문	타일붙이기	전면수리	30	100
		부분수리	8	10
	돌붙이기	전면수리	40	100
	수성페인트	부분수리	25	5
	철제창·문	전면재도장	5	100
		창·문틀수리	15	20
		창·문수리	15	15
	알미늄창·문	전면교체	30	100
		창·문틀수리	20	10
		창·문수리	20	15
기 타	유성페인트칠	전면교체	40	100
		전면재도장	3	100
	합성수지페인트칠	전면재방청	6	100
		전면재도장	6	100
	지붕낙수구	전면재방청	12	100
		부분수리	6	10
	홈통	전면교체	28	100
		부분수리	6	10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8	16
쓰레기투입구 및 소제구		전면교체	30	100
		부분수리	5	25

## 2. 전물내부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내 벽	회반죽 마감	부분보수	7	20	
		전면보수	30	100	
	모르터 마감	전면보수	30	100	
	보드(텍스)류	전면보수	25	100	
	수성도료 칠	전면도장	5	100	
	유성도료 칠	전면도장	5	100	
	합성수지도료 칠	전면도장	6	100	
	회반죽 마감	부분보수	7	20	
		전면재마감	30	100	
	보드류	전면재붙임	20	100	
바 닥	타일붙임	부분수리	20	10	
		전면재붙임	50	100	
	벽지	전면재도배	10	100	
	수성도료 칠	전면재도장	5	100	
	유성도료 칠	전면재도장	5	100	
	합성수지도료 칠	전면재도장	6	100	
	칸막이벽(목재)	부분수리	10	15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10	10	
	모르터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재마감	20	100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내부 청·문	타일 붙임	부분수리	8	10	
		전면재붙임	30	100	
	인조석 깔기	부분보수	15	10	
		전면보수	30	100	
	마루 널깔기	부분보수	7	15	
		전면재깔기	25	100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6	15	
		전면교체	18	100	
	알미늄 청·문	청·문틀수리	20	10	
		청·문수리	20	15	
계 단		청·문교체	40	100	
	목재 청·문	청·문틀수리	13	18	
		청·문수리	10	20	
		청·문교체	28	100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7	10	
		전면수리	25	100	
	모르터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바닥아스타일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15	100	
계단 논스립	계단 논스립	전면교체	15	100	
	철제 난간	전면교체	23	100	철제 및 목재 혼합난간 포함
	스텐레스 난간	전면교체	40	100	
	유성 페인트	전면도장	5	100	

### 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구 分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비	내연기관	교체	30	100	
	발전기	교체	30	100	
	냉각수 탱크	교체	15	100	
	기름 탱크	교체	20	100	
	배전반	교체	20	100	
	작동 제어반	교체	20	100	
	축전지	교체	4	100	
	변압기	교체	20	100	
	콘덴사	교체	20	100	
	수전반	교체	20	100	
변전설비	배전반	교체	20	100	
	유도전압조정기	교체	20	100	
	축전지	교체	10	100	
	충전기	교체	18	100	
	스위치	교체	5	100	
	콘센트	교체	6	100	
	배선배관	교체	20	100	
	인타폰 설비	교체	20	100	
	자동화재감지	교체	20	100	
	시설	교체	20	100	
옥내배선설비	수신반	교체	20	100	
	소화펌프	해체수리	9	50	
		교체	20	100	
	모터	교체	20	100	
	내연기관(엔진)	교체	25	100	
	소화기구	교체	20	100	
	스프링클러	교체	25	100	
	급수변	교체	20	100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승강기 및 인양기	급수관방노피복	교 체	15	100	
	기계장치	교 체	15	100	
	와이야로프	교 체	5	100	

####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가스설비	터빈펌프	교 체	15	100	
	고가수조	교 체	20	100	
	급수관	교 체	15	100	
	수량계	교 체	15	100	
	배관	교 체	15	100	
	가스총크	교 체	13	100	
	펌프	교 체	12	100	
	배수관	교 체	15	100	
	배변관	교 체	25	100	
	대변기	교 체	20	100	
위생기구설비	소변기	교 체	25	100	
	세면기	교 체	20	100	
	수세기	교 체	20	100	
	세탁조	교 체	17	100	
	경상싱크	교 체	20	100	
	환기팬	교 체	15	100	

#### 5. 난방 및 금탕시설

구 分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금탕설비	보일러	해체수리	10	10	
		교체	15	100	
	급수탱크	교체	15	100	
	보일러수관	교체	9	100	발브류 포함
	난방순환펌프	교체	10	100	
	유류저장탱크	교체	20	100	
	난방관	교체	15	100	보온피 포함
	순환펌프	해체수리	5	20	
		교체	10	100	
	금탕조	교체	15	100	

#### 6. 옥외 부대시설

구 分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 선 율 (%)	비 고
옥외 부대시설	콘크리트포장	전면수선	12	100	
	아스팔트포장	전면수선	12	100	
	피·브이·시피복철망울타리	전면수선	30	100	
	아연도금철망울타리	알미늄페인트	6	100	
		전면교체	30	100	
	어린이놀이터시설	전면교체	15	100	
	보도블록	전면교체	12	100	
	정화조	부분수선	7	15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	5	10	

[별지]

#### ○○ 공동주택단지의장기수선계획표

준공일자: . . . 총 세대 수: . . 세대  
총분양면적: 계획표작성일자: . . .

공사장소	공사시방	수량	단가	년도별 추정수선공사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선비총액			계						

년 월 일

작성자 : ○○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성명

①

#### 작성요령

- “공사장소”란에는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분(예: 외벽, 지붕 등)을 기재한다.
- “공사시방”란에는 수선공사의 내용(예: 수성페인트 2회칠, 아스팔트방수 등)을 기재한다.
- “수량”란에는 수선공사의 수량 및 단위(예: 00m<sup>3</sup>, 00m, 00개 등)를 기재한다.
- “단가”란에는 해당 수선공사의 단위당 추정공사비를 기재하되, 제경비를 포함한다.
- “년도별 추정 수선공사비”란에는 수선예정년도별로 추정수선공사비(수량×단가)를 기재한다.

#### 구멍탄온돌의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작성지침

####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멍탄을 연료로 하여 난방하는 구멍탄 온돌의 시공에 적용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한다.

\* 작성기준 : 10분의1 이상

#### 나. 고래부분

##### 1) 고막이

온돌방의 4주변의 벽밀 고막이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깊이 축조하며, 균열 및 틈이 없어야 한다.

##### 2) 꼴 턱

온돌방 4주변의 벽밀 고막이에 벽돌 등을 붙여 쌓으며, 연탄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줄눈 및 고막이와의 밀착 부분에 시寤을 철저히 한다.

##### 3) 고래바닥의 경사

고래바닥의 경사는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수직:수평) 이상의 경사를

####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한국공업규격 KSF 7010(구멍탄온돌시공지침)의 2에 따른다.

#### 3. 구멍탄온돌의 시공방법 등

구멍탄온돌의 시공방법 등은 당해지역의 지형적 특성 및 기후적 특성, 특히 동절기의 기온·주풍향·풍속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 가. 환기용 개구부 또는 환기설비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

짓거나 끝언덕을 한다.

\*작성기준: 5이하

- 4) 고래바닥 및 구들벽의 방수처리 및 단열층의 설치는 건축법시행규칙제18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5) 개자리

굴뚝이 있는 벽면을 포함하여 온돌방 □변 이상의 벽밀 고막이 부분에 개자리를 설치하며, 고래바닥보다 □cm 이상의 깊이에 폭은 □cm로 한다.

\*작성기준: 2이상, 30이상, 18~20

6) 동바리

동바리의 밑면은 흔들리거나 내려앉지 않도록 하며, 그 면적은 윗면보다 넓어야 한다.

7) 펌돌

펌돌은 구들장이 고래둑 또는 동바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두께 3cm 이상의 내화성 및 내식성과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8) 구들장

가) 구들장은 반듯하고 미끈한 면을 밑으로 놓으며, 구들장이 벽면과 만나는 곳에는 구들장을 벽면에서 5cm정도 떨어지게 놓되, 벽면 쪽은 펌턱에, 그밖의 것은 동바리 또는 고래둑 위에 놓는다. 구들장 틈에는 쇄기들을 끼워 구들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다지고, 사축을 철저히 한다.

나) 고정식아궁이에서 분배관의 상부부분과 이동식아궁이에서 합실 상부부분의 구들장은 기타 부분보다 두껍게 하여야 하며, 구들장은 굴뚝 쪽으로 갈수록 점차로 얇게 한다.

- 9) 고래바닥과 구들장 밑면까지의 이격거리는 □cm 이상으로서 고래아랫목 쪽으로 갈수록 경사에 따라 짚어야 한다.

\*작성기준: 12이상

다. 아궁이 부분

- 1) 고정식아궁이 시공은 구들시공을 끝내고 난후 분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아궁이는 구들장을 놓을 때에 같이 시공한다.

2) 화덕

구멍탄용 연소통 및 연소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어 생산한 제품어야 한다.

3) 연소통의 위치

고정식아궁이의 연소통은 연소통의 외벽과 온돌방의 벽면과의 사이가 15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4) 연소통의 주위벽 및 바닥 등의 방수처리 및 단열층 설치

고정식연탄아궁이의 연소통의 주위벽 및 바닥, 이동식아궁이의 합실벽과 아궁이 및 그 바닥의 단열층의 설치는 건축법시행규칙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며, 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

수처리를 한다.

5) 공기관 및 공기조절마개

공기관은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면이 높을 때는 공기관의 끝부분이 연소통의 윗면보다 낮아야 하며, 공기관 끝부분에는 공기조절 마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도목

유도목은 30°~45°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며, 연소통 뚜껑의 끝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 분배관

분배관의 안지름은 □cm 이상, 길이는 □cm 이상으로서 3개 이상을 유도목에 붙여 설치하며, 그 경사는 건축법시행규칙제18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작성기준: 5이상, 50이상

8) 합실아궁이의 높이등

합실아궁이 밑바닥에서 방바닥까지의 높이는 □cm 이상으로 하며, 화덕의 윗면과 구들장 밑면과의 사이는 20~30cm로 한다.

\*작성기준: 75이상

9) 합실아궁이문

이동식아궁이에 설치하는 합실아궁이의 문짝은 개폐가 용이하고 정확하게 밀폐될 수 있어야 하며, 문짝틀에는 공기조절마개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 굴뚝부분

1) 굴뚝의 구조 및 높이

건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따르고, 굴뚝은 내화성 및 내식성을 가진 재료로 사용하되, 내부면은 연탄가스가 원활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매끈하여야 하며, 내부단면적은 □cm<sup>2</sup>이상으로 한다.

작성기준: 150이상

2) 굴뚝목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커야 하며, 굴뚝목이 윗면높이는 구들장의 밑면보다 □cm 낮게 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작성기준: 12이상

3) 굴뚝개자리

굴뚝개자리는 굴뚝목의 아래면에서 □cm 이상 깊게 하고, 그 폭은 굴뚝안지름보다 □cm 이상 크게 하며, 벽돌이나 콘크리트등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구축하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작성기준: 30이상, 10이상

4) 청소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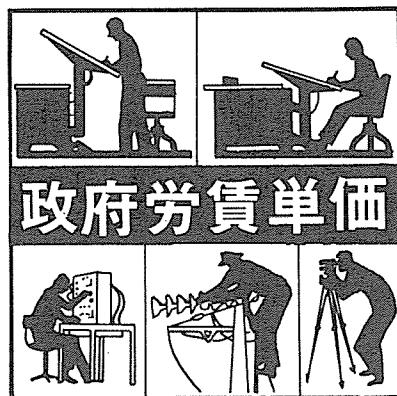
굴뚝 밑부분에는 □cm×□cm이상의 굴뚝청소구를 내어 뚜껑을 덮거나 문을 단다.

\*작성기준: 12이상, 15이상

5) 굴뚝갓

굴뚝 상부에 튼튼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KSF 7010(구멍탄온돌시공지침) 및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16장 온돌공사를 참고하여 정한다.



### 政府勞賃單價基準適用要領

- 이 노임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노임단가는 기본금액을 표시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상하여 산정된 단가이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 검

정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主務部處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노임단가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이 노임단가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이 기준 중에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다.
- 이 노임단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이를 조정한다.
- 島嶼地域 노임단가의 적용지역은 島嶼地域 一圓(濟州島, 鬱陵島포함)으로 한다.
- 이 기준은 1984. 1. 1부터 적용한다.

職番	種號	職種名	單價
1	개	부	8,100
2	도	목 수	11,430
3	조 선	목 공	9,850
4	건 축	목 공	9,720
5	형 틀	목 공	9,530
6	창 호	목 공	9,730
7	동 발	목 공 (터 널)	9,970
8	철	골	9,700
9	철	공	9,010
10	철	근	9,360
11	제	판	9,490
12	강	판	8,680
13	대	장	7,450

職番	種號	職種名	單價
14	셋 터	공	10,280
15	샷 시	공	9,530
16	절 단	공	8,100
17	석	공	10,260
18	활 석	공	10,180
19	특 수 비 계	공 (15m 이상)	10,870
20	비 계	공	9,800
21	동 발	공 (터 널)	9,970
22	제 철	축 로	15,930
23	조	직	9,430
24	벽 돌(부 럭)	제 작	8,080
25	연	돌	8,600
26	미	장	9,450

職種番號	職種名	單價
27	방수공	9,080
28	타일공	9,370
29	줄눈공	8,560
30	연마공 (손갈기)	8,830
31	연마공 (기계갈기)	9,000
32	콘크리트공	8,330
33	양생공	6,770
34	바이브레이터공	7,700
35	보이러공	9,890
36	냉동공	8,850
37	배관공	9,010
38	온돌공	8,750
39	위생공	8,310
40	보온장공	8,160
41	도장장공	9,210
42	제작장공	6,510
43	내장장공	8,920
44	돛자리공	8,310
45	도배공	8,940
46	아스타일공	9,570
47	개와이트공	9,400
48	스레이트공	8,840
49	화약취암공	11,480
50	착작암공	9,700
51	보포장공	6,830
52	포설공	9,000
53	포도공 (철도)	9,530
54	궤도공 (일반)	10,180
55	궤도용접공 (철도)	7,110
56	점수부 (4인조)	11,330
57	점항공	55,250
58	보링공 (지질조사)	12,700
59	우물공	8,580
60	영림기사	8,000
61	조원공	11,110
62	벌채지도인부	9,040
63	벌목인부	7,090
64	조림인부	7,630
65	프랜트기계설치공	8,000
66	프랜트용접공	12,330
67	프랜트배관공	9,790
68	프랜트제관공	10,500
69	프랜트축량사	10,460
70	시공축량사	11,310
71	시공축량사조수부	6,860
72	축조부	5,390
73	검조부	4,570
74	송전전공	16,090
75	배선전공	12,870
76	프랜트전공	11,920
77	내전전공	10,220
78	특고압케이블전공	16,100
79	고압케이블전공	13,150
80	저압케이블전공	11,610
81	철도신호공	10,230
82	계장공	9,840

職種番號	職種名	單價
83	전기공사기사 1급	15,350
84	" 2급	11,700
85	통신외선공	11,290
86	통신설비공	10,830
87	통신내선공	10,140
88	통신케이블공	13,480
89	무선탐내선 1급	13,070
90	통신기사 2급	16,160
91	통신기사 2급	12,980
92	통신기사 3급	11,230
93	통신기사 3급	11,380
94	통신기사 3급	9,150
95	통신기사 3급	10,050
96	통신기사 3급	6,640
97	통신기사 3급	6,500
98	통신기사 3급	7,460
99	통신기사 3급	5,560
100	여운전자 1급	3,620
101	중운전자 2급	10,410
102	운전사 (운반차)	9,570
103	운전사 (기계)	9,070
104	중기운전조수	6,840
105	고급통신선	12,000
106	보통통신선	8,110
107	선설선	7,260
108	준설선	13,050
109	준설선	12,290
110	준설선	10,100
111	준설선	10,020
112	준설선	9,830
113	사공 (배포함)	11,250
114	기계설치	9,290
115	기계반비	8,640
116	선정비	8,690
117	벨트콘베이어작업공 (남)	9,480
118	" (여)	7,280
119	현도	3,610
120	제도	11,590
121	미술사	9,170
122	미술사	7,490
123	협사 1급	12,610
124	" 2급	11,300
125	" 3급	9,560
126	" 4급	8,020
127	시험보조수	6,260
128	비파괴시험사	9,530
129	안전관리기사 1급	14,440
130	" 2급	10,270
131	마부 (우마차포함)	16,820
132	제재	9,600
133	유리	9,800
134	함석접	9,020
135	용봉	9,550
136	리벳	10,280
137	빠데도포	8,230
138	루핑	7,960